탄 원 서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관련 형사사건

사건번호 _____

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 부

피고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 1 차관 ·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탄원 취지 다투는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선고 및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신중하고 비례적인 판단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 부 귀중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사건의 재판 경과를 공개된 보도를 통해 접한 시민으로서 김오진 피고인에 관한 탄원서를 올립니다. 공공계약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었다면 누구도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합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의 직위나 당시 사업의 긴급성을 이유로 이미 인정된 잘못을 덮어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고 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동일한 정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정한 행위와 다투는 범죄사실, 행정상 잘못과 형사법상 고의, 책임 있는 결정과 그 집행 과정의 관여를 세심하게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증명이 없는 혐의는 무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책임만큼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탄원의 핵심입니다.

1. 일부 인정한 혐의와 여전히 다투는 공소사실을 분명히 구별해 주십시오

2026 년 10 월 26 일 결심공판 보도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것으로 지목된 21 그램의 공사 참여, 다른 업체의 명의 사용, 추가 공사계약을 통한 약 16 억 원의 사기 혐의, 준공검사와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은 각각 구성요건과 입증 대상이 다릅니다. 아래의 사실관계는 확정된 유죄사실이 아니라 공판에서 심리된 공소사실 및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 따르면 김오진 피고인 측은 일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절차상 위법을 막지 못한 책임과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범행을 설계했다는 주장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인정한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그 인정의 의미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한 직권남용이 어느 지시와 상대방 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느 문서의 작성·행사까지 인정한 것인지, 다른 혐의에 관한 인정 여부와 범위는 어떠한지 최종변론과 공판조서에 따라 명확히 구별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보도만으로 일부 혐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확정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인정 범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된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구하고, 아직 다투어지는 혐의에 대해서는 별개의 증거와 법률적 심리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사실의 인정이 나머지 범죄의 고의·공모·결과까지 당연히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2. 업체 선정과 명의대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행위를 특정해 주십시오

특검은 특정 업체를 관저 공사에 참여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관련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공판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026 년 9 월 공판 보도에는 피고인이 2022 년 4 월 무렵 업체의 연락처와 관련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후 피고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실행한 행위는 차례로 구별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명의 사용을 누가 제안하고 교섭했는지, 21 그램과 다른 업체가 갖춘 등록·면허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피고인이 법령상 제한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실제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거별로 확인해 주십시오. 당시 일부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후속 행동이 모두 강제되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사업 전 과정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설계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관저 이전이라는 사업의 긴급성이나 보안상 필요가 법령 위반을 당연히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환경이 피고인의 실제 판단 가능성과 조치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관련되는 한, 불리한 정황과 함께 빠짐없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직권남용 혐의는 실제 직권·상대방의 의무·결과를 구분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 123 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는지와,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2 년 1 월 27 일 선고 2010 도 11884 판결 및 2020 년 1 월 30 일 선고 2018 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단지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지시의 내용, 권한의 근거, 상대방의 직무상 권한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구별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 주십시오.

이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등 계약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어떤 문구와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관계 공무원에게 독자적인 심사·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그 요구로 어떤 절차가 생략되거나 변경되었는지를 각각 살펴 주십시오. 이미 법령상 정해진 업무의 정당한 협의와 부당한 압박을 구별하되,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을 실제 체결하게 한 행위가 증명된다면 그 사실 역시 엄정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그 부분을 형식적인 절차 위반으로 낮추어 보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된 직권행사의 범위와 다른 계약·교섭·지시까지 포함하는 공소사실은 구별되어야 하며, 후자의 성립 여부는 독립적인 증명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약 16 억 원 관련 사기 혐의는 기망·처분·편취액 및 공모를 별도로 심리해 주십시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지출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감추고,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관계 공무원들을 기망하고 약 16 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계약의 실질을 알면서 허위 명목으로 국가의 지급을 유도하였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추상적인 사업 책임이나 절차 위반의 인상이 아니라 계약별 증거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공사 내용과 실제 추가 공사의 범위, 산출·정산 자료와 대금 지급 사유, 담당자들이 어떠한 사실을 믿고 지급을 결정했는지, 피고인이 계약의 실질 및 지급 구조를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피고인과 다른 피고인 사이에 공동의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추가 계약이나 명의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모든 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 16 억 원이라는 규모만으로 각 피고인의 기망 의사나 공모 범위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체결되고 어떤 공사비가 지급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의 재산상 처분이 어떠한 허위사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김오진 피고인이 그 과정의 핵심 내용을 알고 가담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는 특검이 제기한 편취 의혹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혐의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5. 준공검사와 공문서 관련 책임은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개별 판단해 주십시오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에 관한 법정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공계약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결심공판 보도에서는 피고인 측이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서에 아무런 허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탄원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판단하시되, 인정되지 않은 다른 문서와 행위까지 함께 묶어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서마다 작성명의자,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 작성·결재·행사의 시점과 경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알고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부를 인정하였다는 사정과 별개로, 특정 공문서에 관한 형사책임이 다른 공문서의 작성·행사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직무유기 혐의도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년 6 월 30 일 선고 2021 도 8361 판결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업무 처리의 태만이나 불성실과 법률상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감독·검사 의무가 부과되었는지, 의무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피고인이 그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수행을 포기했는지를 따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실무상 착오라고 미리 단정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6. 별도 예산 전용 사건과 이 사건의 판단 범위를 구별해 주십시오

김오진 피고인은 관저 공사비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별도 사건의 혐의나 주장만으로 이 사건의 사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행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해석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법률상 적법하게 제출된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와 한계는 재판부가 판단하실 일입니다. 저는 피고인의 과오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혐의별로 판단 대상과 증거가 명확히 구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7. 인정되는 책임과 증명되지 않은 혐의를 나누어 최종 판단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2026 년 10 월 26 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11 월 20 일 선고가 예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주장, 검사의 구형 사유를 바탕으로 각 혐의에 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공소장 전문이나 공판조서 전체를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인품이나 가족 사정, 공적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 조 제 2 항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 325 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김오진 피고인이 일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사실에 필요한 기망행위·편취의 고의·공모나 직무유기의 의식적 포기 등은 법정의 증거로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반면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외면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실제 결정권과 지시 범위, 확인된 피해 및 이익의 귀속, 인정한 잘못과 반성의 정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과중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형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게 하거나, 일부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까지 당연히 받아들이는 판단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재판부께. 저는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뿐 아니라, 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법률과 증거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김오진 피고인이 인정한 잘못은 분명히 판단하시되, 별개로 다투는 혐의 가운데 범죄의 성립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